

의안번호	제419호
의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23년 10월 4일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419
------------	-----

제출연월일 : 2023년 10월 4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교통약자법령의 개정시행('23.7.19)으로 교통약자의 광역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 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간(예정 : 2024. 1. 1. ~ 2026. 12. 31.)
- 위탁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 수탁기관 :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조합·연합회 등
- 사업비 : 1,588백만원(도비 100%) *24년 기준(센터 구축비 포함)
 - ※ 위탁 2, 3년차는 예산범위내 지원
- 위탁범위 :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전반
- 위탁사무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관리
 -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운영 및 관리
 -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지원
 -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 등

3. 추진일정

- 수탁기관 모집공고(2023. 10. ~ 11.)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2023. 12.)
- 위·수탁 협약체결(2023. 12.)

4. 참고사항

-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
 -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2조의2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5조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교통약자의 광역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교통약자법」 제16조 제11항(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4조의3(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2조의2(위탁)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II

위탁개요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예정 : '24. 1. ~ '26. 12.)
-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최고점 기관 선정
- 수탁기관 :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4조의3의 기관 또는 단체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사업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조합·연합회 등
- 위탁범위 :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전반

○ 위탁사무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관리
-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운영 및 관리
-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지원
-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등

○ 사업비 : 1,588백만원(도비 100%) *24년 기준(센터 구축비 포함)

인건비(1,020,000천원)	운영비(392,000천원)
- 센터장 65,000천원×1명 = 65,000천원	- 광역센터 홍보비 = 30,000천원
- 관리직 55,000천원×1명 = 55,000천원	- 사무관리, 소모품, 공공요금 = 27,000천원
- 상담원 50,000천원×18명 = 900,000천원	- 차량랩핑 등 = 100,000천원
구축비(176,000천원)	
- 센터 임대료 및 관리비 = 50,000천원	- 시스템 유지보수비 = 50,000천원
- 센터 인테리어 및 공사 = 30,000천원	- 이동지원통신비 = 36,000천원
- 관제시스템 및 홈페이지 리뉴얼 = 50,000천원	- 서버장비 IDC 사용료 = 8,400천원
- 사무실 환경구축(가구 및 집기류 등) = 40,000천원	- 고용승계 직원 주택(교통) 보조비 = 60,000천원
- 센터 PC, 모니터 부족분 구매 = 6,000천원	- 개소식 = 5,000천원
	- 일반관리비 = 75,600천원

※ 위탁 2, 3년차는 예산범위내 지원

III

추진절차

① 의회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위탁 의회 동의 ※ 충청북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회기 중	'23.10.
② 공개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집공고<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법) 공개모집(공고일로부터 7일)- (자격) 「교통약자법 시행령」제14조의3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23.10. ~11.
③ 수탁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 9명 이내- (심사) 사업계획, 사업수행능력 등- (선정) 심사기준표에 의함(고득점자 선정)	'23.12.
④ 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수탁 협약체결	'23.12.
⑤ 사무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수탁 사무개시	'24.1.~

① 수탁기관 공개모집 ('23. 10월~11월)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 공고방법 : 도 홈페이지 공개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
- 신청자격 :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4조의3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 위탁조건
 - 관계법령·조례 등을 준수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
 -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은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결정
 - 시군 이동지원센터 상담원 고용승계

②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23. 12월)

- 위원구성 : 9명 이내(관계 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 ※ 당연직 3명(기획관리실장, 행정국장, 균형건설국장), 해당분야 전문가 위촉
- 심사항목 : 사업계획 적정성,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
- 심사방법 : 신청기관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 선정방법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최고점 기관 선정

③ 위·수탁협약체결 ('23. 12월)

○ 협약내용

- 위탁사무, 위탁기간, 예산의 지원, 근로조건 보호, 계약의 해지 등
- 위탁운영 권리 양도 불가 등

V

향후 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심의 : '23. 10월
- 수탁기관 공모 : '23. 10월~11월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3. 12월
- 협약 체결 : '23. 12월
- 수탁기관 사무편람 승인 : '23. 12월
- 위·수탁사무 개시 : '24. 1월 ~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 추진에 따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2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비고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 충북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전문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교통약자법 시행령」에 따른 관련 업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교통약자의 광역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를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 제공	
③ 경제적 효율성	○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리에 필요한 적정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관리·운영할 예정이며, 체계적인 사업 계획 수립 추진으로 경제적 효율성 제고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교통 및 여객운송 분야 민간의 전문지식, 인력,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도내 교통약자의 광역이동 지원을 위한 체계구축 및 사업 전문화 가능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 교통약자 서비스 제공 등 사업실적, 예산관리,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성과 측정 용이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으며, 위·수탁 체결을 통해 운영방식 및 사업계획 관리를 통해 투명성 제고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확대되는 추세로 민간 서비스 시장의 전문화된 상담원 채용을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서비스 질 제고에	

□ 검토결과 :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정”

-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는 충청북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 경험과 전문지식이 축적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목적달성에 유리할 것으로 사료됨

⇒ 사업내용의 공공적 성격이 명확하고,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체계적인 사업추진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참고

관련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⑪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 ① 법 제16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②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법 제16조제9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할 업무의 내용을 해당 시·군 또는 도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시·군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 및 지역간 특별 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7.7.>

제12조의2(위탁)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7.]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되는 사무
4. 그 밖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사무 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회차 계약부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다.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위탁금액이 연간 5천만원 이하면서 일회성 행사적 성격의 사무
2.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